

# 부 록

- 서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716면
- 서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 조례안 ..... 718면
- 서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 조례안 ..... 719면
- 서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26면
-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27면
- 서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729면
- 서산군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732면
- 서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 733면
- 서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734면
- 서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개정조례안..... 736면
- 서산군읍. 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 736면
- 서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37면
- 서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38면
- 서산군사무의읍. 면. 사업소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 739면
-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41면
-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43면

-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745면
- 서산군명예읍. 면장조례폐지조례안 ..... 745면
- 서산군부녀회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 745면
- 서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 조례폐지조례안 ..... 745면
- '93행정사무감사계획 ..... 746면
-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748면
- '92예비비지출승인내역 ..... 754면
-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보고서 ..... 755면
-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내역 ..... 760면
-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 763면
-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내역 ..... 784면
-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 789면
-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내역 ..... 794면

## 서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군 물가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위원회는 서산군에 설치 운

영한다.

제 3 조 (기능) ①위원회는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중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범위안에서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범위 안에서 구성한다.